

학습경험 학점인정에 관한 규정

제1조(목적) 이 규정은 「학사에 관한 시행세칙」 제23조 ⑦항에 관한 세부사항과 그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용어의 정의) ① “학습경험”은 학생이 입학 전 또는 재적기간 중 다른 학교, 기관, 산업체 등에서 받은 교육, 연구, 실습, 직장근무 등을 통해 전공과 관련된 개인의 역량을 개발하거나 지식을 습득하는 등 학습이 발생하는 다양한 경험을 말한다.

② “학습경험 학점인정”은 직장근무, 연구, 실습, 타 기관에서의 교육 등 전공과 관련된 다양한 학습경험을 학점으로 인정해주는 절차를 말한다.

제3조(학습경험 학점인정심의위원회) ① 학습경험 학점인정을 공정하게 심의하기 위해 학습경험학점인정심의위원회(이하 ‘위원회’라 한다)를 둔다.

② 학습경험학점인정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7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.

③ 위원장은 교무처장이 되며, 위원은 교무처장의 제청으로 총장이 위촉하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.

④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.

1. 학습경험 학점인정 규정 제·개정에 관한 사항
2. 학습경험 학점인정 연간 운영 계획 및 추진 방안에 관한 사항
3. 학습경험 학점인정 기준 설정에 관한 사항
4. 학습경험 학점인정 신청 및 승인에 관한 사항
5. 기타 학습경험 학점인정에 관한 사항

⑤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최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.

제4조(신청대상) 우리 대학의 재학생에 한하여 신청할 수 있다.

제5조(신청범위) 국내·외의 다른 학교, 기관 또는 산업체 등에서 학습·연구·실습한 사실이 인정되거나 산업체에서 근무한 사실이 인정되는 경우에 학점으로 인정할 수 있다.

제6조(인정절차) ① 위원회에서는 학점인정에 대한 계획을 수립하고 학사관리과는 이를 학부(과) 및 학생에게 공고하여야 한다.

② 학생은 학습경험 학점인정신청서를 작성하여 증빙자료와 함께 학부(과)로 제출해야 하며, 학부(과)에서는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을 심의 후 학사관리과에 제출하여야 한다.

1. 학습경험 학점인정 신청 학생 제출 서류 및 증빙자료 확인
2. 학부(과) 학습경험 전공학점 인정 적절성 확인

학습경험 학점인정에 관한 규정(7-1-19)

3. 기타 학부(과) 학습경험 학점인정에 관한 사항

③ 학사관리과는 학부(과)로부터 제출받은 학습경험 인정 평가 관련 자료를 점검하여 위원회에 평가 결과 심의를 요청하고, 심의 결과를 학부(과) 및 학생에게 안내하여야 한다.

제7조(학습경험 학점인정 신청) ① 학습경험 학점인정 신청 시기는 학사관리과의 공고에 따른다.

② 학습경험 학점인정 신청자는 신청서와 함께 증빙 서류를 첨부하여 소속 학부(과)에 신청하되, 학부(과)의 심의를 거쳐 학사관리과에 제출하여야 한다.

③ 학점인정 신청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.

1. 학습경험 학점인정신청서

2. 경력증명서, 실습확인서, 교육이수증명서 등 학점인정을 위한 근거자료

제8조(학습경험 학점인정 기준) ① 학습경험 학점인정은 최대 6학점 이내로 전공 또는 일반선택으로 인정하며, 인정과목 및 이수 시간은 아래와 같다.

교과목명	학점	이수시간
자기설계학습경험 I	1	4주(80시간)이상
자기설계학습경험 II	2	8주(160시간)이상
자기설계학습경험 III	3	12주(240시간)이상

② 학습경험 학점인정은 한 기관에 1회만 적용되며, 동일 교과목에 관하여 1회만 인정 가능하다.

③ 학습경험 학점인정에 해당되는 기관 및 산업체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.

1. 국가,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단체

2. 방송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방송국 및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9조의 규정에 의거 등록된 신문사 등

3. 의료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의료기관

4. 근로기준법 제11조의 규정에 의거 상시 5인(사업주포함)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산업체

5. 국가·지방단체 및 공공단체에 등록된 단체로서 산업체가 구성원인 단체

6. 건강보험, 고용보험, 국민연금, 산재보험 등에 가입되어 있는 산업체

7. 기타 총장이 특별히 인정하는 기관

제9조(성적평가) ① 위원회에서 심의를 통해 교과목별 성적을 P/F로 부여한다.

② 인정된 학점은 졸업학점에 포함되며, 평점평균에는 반영하지 않는다.

제10조(기타) 이 규정이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이 정한다.

학습경험 학점인정에 관한 규정(7-1-19)

부 칙

(시행일) 이 규정은 2024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<별첨 1>

학습경험 학점인정 신청서[학생용]

학부(과)명		학 번	
성 명		연락처	

□ 학점인정 신청 정보

기관명	학습경험명	학습경험 내용	학습경험 기간 (총이수시간)	대면/ 비대면	비고

※ 학생 증빙서류 제출 : 1. 기관 사업자등록증 2. 교육·연구·실습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(총 이수시간 포함)

□ 학습경험 내용

학습경험 교육내용 기 술 ※ 자세하게 작성	※ 전공과 관련된 학습경험만 학점으로 인정 가능합니다.
---	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

□ 학점인정 심의 결과 ※ 학부(과) 작성

학습경험 학점인정 교과목	이수구분	교과목명	학점	비고
	☐ 전공 ☐ 일반선택	☐ 자기설계학습경험Ⅰ	1	
		☐ 자기설계학습경험Ⅱ	2	
		☐ 자기설계학습경험Ⅲ	3	

※ 학사에관한시행세칙 제23조 ⑦항에 의거 학습경험 학점인정에 대한 학점인정을 받고자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.

※ 문서에 기재된 내용과 첨부서류는 모두 사실이며, 사실과 다를 경우 학점인정 취소 등을 포함한 불이익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.

※ 학습경험 학점인정 신청 교과목은 교과목별 최종심의가 모두 끝난 후 결과가 안내됩니다.

※ 학습경험 학점인정은 한 기관에 1회만 적용되며, 동일 교과목에 관하여 1회만 인정 가능합니다.

20 년 월 일

신 청 인 :

(서명)

성결대학교 총장 귀하

<별첨 2>

학습경험 학점인정 평가서(학부(과)용)

학부(과)명		학 번	
성 명		연락처	

학습경험 학점인정 교과목	이수구분	교과목명	학점	최종 평가 결과
	☐ 전공 ☐ 일반선택	☐ 자기설계학습경험 I	1	☐ PASS ☐ FAIL
		☐ 자기설계학습경험 II	2	☐ PASS ☐ FAIL
		☐ 자기설계학습경험 III	3	☐ PASS ☐ FAIL

적격 여부 평가표			
항목	검토사항	적격여부 (O,X)	의견
학습경험과 전공연관성	학습경험과 전공 일치성 여부		
학습내용 숙달도	학습경험(숙달도)이 교과목의 교육목표를 충족하고 달성(재현) 가능한가		
학습기간의 적정성	학습경험이 교과목의 교육목표를 충족할 수 있을 정도의 기간(경험)인가		
대면평가	교과목에 대한 학습경험 및 지식의 전반적인 검증 평가		

위와 같이 평가하였음을 확인합니다.

20 년 월 일

학부(과)장 : _____(서명)

성결대학교 총장 귀하

※ 학부(과)에서 학점인정 심의 후 증빙서류 첨부하여 공문으로 제출
(1. 학생 신청서, 2. 기관 사업자등록증, 3. 교육·연구·실습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)